|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

**【문제 1】(9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정건설의 자료이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회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과 상가를 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2. 2017년 토지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국민주택 건설 용도 | 900,000,000 | 500,000,000 | 600,000,000 | | 상가건설 용도 | 3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017년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 구 분 |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국민주택 | 건물분 | 3,000,000,000 | 700,000,000 | 900,000,000 | | 토지분 | 1,250,000,000 | 850,000,000 | 890,000,000 | | 상가 | 건물분 | 1,200,000,000 | 409,000,000 | 700,000,000 | | 토지분 | 850,000,000 | 341,000,000 | 519,000,000 | | 해외국민주택건설용역 | | 2,000,000,000 | 800,000,000 | 891,000,000 | | 합 계 | | 8,300,000,000 | 3,100,000,000 | 3,900,000,000 |   4.  2017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1.1.～6.30. | 7.1.～9.30. | 10.1.～12.31. | |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 관련 | 200,000,000 | 50,000,000 | 60,000,000 | | 상가 건물  건설 관련 | 100,000,000 | 40,000,000 | 50,000,000 | |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 150,000,000 | 60,000,000 | 70,000,000 | | 공통매입세액1\*1 | 3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공통매입세액2\*2 | - | - | 50,000,000 | | 합 계 | 480,000,000 | 160,000,000 | 250,000,000 |   \*1 공통매입세액1은 회사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며,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2 2017년 10월 10일에 구입한 새 레미콘믹서기의 매입세액이다.  5.  국내국민주택 건물 건설과 상가 건물 건설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구 레미콘믹서기(2014년 4월 4일 400,000,000원에 구입)를 2017년 10월 10일에 100,000,000원에 매각(장부가액 80,000,000원)하고, 같은 날 동일한 용도의 새 레미콘믹서기를 5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

**(물음 1)**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으로 제시하시오. 단, 과세표준 또는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 또는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1.국내국민주택 공급 |  |  |  |
| 2.상가 공급 |  |  |  |
| 3.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 |  |  |  |
| 4.레미콘믹서기 매각 |  |  |  |
| 합 계 |  |  |  |

**(물음 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2】(11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박눈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7년 11월 30일 임대의 어려움과 자금난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었다. 201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다음과 같다.

|  |
| --- |
| **< 자 료 >**  1. 임대용 건물은 주택 50m2, 상가 150m2, 부수토지 1,000m2로 구성된 단층의 겸용주택이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매달 1일에 40,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2. 위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는 2015년 9월 1일 취득하였으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5,000,000,000원,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3,000,000,000원이고, 폐업일 현재의 감정평가액은 건물 6,000,000,000원, 부수토지 4,000,000,000원이다.  3. 사업장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는 2016년 4월 1일에 |

|  |
| --- |
| 1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구입시 부가가치세액 1,000,0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폐업시 시가는 6,000,000원이다.   4.   사업장에 있는 비품은 2016년 7월 1일에 2,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 200,0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폐업시 시가는 800,000원이다. |

**(물음 2)** 다음은 2017년 4월 1일 개업한 간이과세자 김조류의 2017년 과세기간(2017년 4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김조류는 닭을 구입하여 털을 제거한 후 생닭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과 프라이드치킨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2. 2017년 공급대가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식료품점 | 음식점 | | 현금영수증 발행분 | 9,000,000 | 10,000,0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7,000,000 | 8,000,000 | | 영수증 발행분 | 5,000,000 | 6,000,000 | |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1 | 3,000,000 | 4,000,000 | | 통신사 마일리지 결제분\*2 | 1,000,000 | 2,000,000 | | 합계 | 25,000,000 | 30,000,000 |   \*1   매출액에 대하여 3%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이다.  \*2   K통신사가 자기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를 식료품점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액의 70%를 K통신사가 보전해 준다. 위 금액은 K통신사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의 70%를 K통신사로부터 현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017년 매입내역     |  |  |  | | --- | --- | --- | | (단위: 원) | | | | 구 분 | 식료품점 | 음식점 | | 계산서 수취 | 9,000,000\*1 | | | 세금계산서 수취 | 1,100,000\*2 | 3,300,000\*3 | | 4,400,000\*4 | |   \*1 닭 구입액으로 실지 귀속은 불분명하며, 가능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 1,100,000원은 접대비로 지출된 것임  \*4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불분명함   4.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다. |

**<요구사항 1>**

김조류의 2017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김조류의 2017년 공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납부세액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공제세액 |
| 1.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
| 2. 의제매입세액공제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

**【문제 3】(14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1)** 갑의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자료 1>**  갑의 금융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발행일 2016년 1월 2일): 5,000,000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000,000원  3.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7,000,000원    4.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상법상 파생결합사채의 요건을 충족함): 4,000,000원  5.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A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2016년 12월 10일 소각하였으며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 20,000,000원  6.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아님)로부터의 이익: 2,000,000원  7. 비상장법인인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B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8,000,000원  8.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000,000원 |

**<요구사항 1>**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요구사항 2>**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  |

**(물음 2)** <자료 2>와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자료 2>**  (2017년 1월 1일∼ 2017년 6월 30일의 소득자료)  갑은 ㈜C(제조업)의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    1. ㈜C로부터의 기본급여 수령액(월 900,000원): 5,400,000원  2. ㈜C로부터의 상여금 수령액(1회 수령하였음): 2,000,000원  3. ㈜C로부터의 식사대 수령액(월 200,000원): 1,200,000원  4.  산불재해로 인하여 ㈜C가 지급한 급여(월 400,000원): 2,400,000원  5. 본인부담분 건강보험료를 ㈜C가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월 100,000원): 600,000원  6. ㈜C로부터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월 500,000원): 3,000,000원  7. 전세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8,000,000원  8. 일시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하여 출연료로 받은 수당: 7,000,000원  9. ㈜C를 퇴사한 후 운영할 예정인 치킨집 개업과 관련하여 ㈜C에게서 지원받은 개업축하금:   5,000,000원  10. ㈜C의 사내장기자랑 행사에서 1등을 하여 수령한 상금: 2,000,000원  11. ㈜C로부터 수령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4,000,000원  12. ㈜C로부터 수령한 휴일근로수당: 1,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3>**  (2017년 7월 1일∼ 2017년 12월 31일의 소득자료)  갑은 2017년 6월 30일에 ㈜C에서 현실적으로 퇴사하였다.  1.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D사(특수관계 없음)에게 대여하고 받은 금품: 6,000,000원  2.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미수금 수령액: 2,000,000원  3. 제작된 지 300년이 경과된 골동품을 A은행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보유기간: 13년, 확인되는 필요경비금액: 82,000,000원): 90,000,000원    4. 근로소득공제액표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

**<요구사항 1>**

생산직근로자로서 받은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갑의 월정액급여와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직전 근로기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었음).

(답안 양식)

|  |  |
| --- | --- |
| 월정액급여 |  |
| 과세대상 초과근로수당금액 |  |

**<요구사항 2>**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단,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답안 양식)

|  |  |
| --- | --- |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

**<요구사항 3>**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기타소득금액 |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

**【문제 4】(8점)**

다음은 거주자 을(48세, 남성)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금융소득금액 | 30,22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원, 정기적금이자 18,000,000원, 배당소득금액 2,220,000원으로 구성됨) | |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제조업) | | 근로소득금액 | 5,880,000원(총급여액 12,3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3,900,000원 |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나이 | 비고 | | 부친 | 73세 | 무료로 슬롯머신을 1회 이용하여  받은 당첨액 2,000,000원 수령 | | 모친 | 71세 | 법원보증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20,000,000원 수령 | | 동생 | 42세 |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음 | | 장남 | 16세 | 중학생이며 소득이 없음 | | 장녀 | 5세 | 유치원생이며 소득이 없음(입양자로 2017년에 입양신고 하였음) |   3. 의료비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모친의 교통사고치료비: 5,860,000원  ② 동생의 재활치료비: 1,009,000원  ③ 장남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800,000원  4.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장남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 1,000,000원  ②  장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1,500,000원  ③  장남의 현장체험 학습비: 600,000원(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체험 학습임)    5.  사업장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50,000,000원의 사업용자산이 상실되었다. 상실 전의 사업용자산총액은 200,000,000원이었다.  6. 종합소득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5억원 초과 | 1억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물음 1)** 을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기본공제액 |  |
| 추가공제액 |  |

**(물음 2)** 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전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대상인 배당소득이며, 을의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  |

**(물음 3)** 을의 자녀세액공제액, 의료비세액공제액, 교육비세액공제액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000,000원이며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고,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자녀세액공제액 |  |
| 의료비세액공제액 |  |
| 교육비세액공제액 |  |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

**【문제 5】(5점)**

거주자 병(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 관련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국내건물과 국외건물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구 분 | 국내건물 | 국외건물 | | 양도일 | 2017.4.20. | 2017.8.22. | | 취득일 | 2016.1.26. | 2014.7.14. | | 실지양도가액 | 500,000,000원 | $400,000 | | 실지취득가액 | 400,000,000원 | $100,000 |   2. 국내건물(상가, 등기되었음)을 취득하면서 리모델링비용(자본적지출에 해당함)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 국내건물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이 발생하였고 양도관련 공증비용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국외건물(주택, 미등기임)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3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1,200원/$)이고 양도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대고객외국환매입률: 900원/$)이다.  5. 국외건물을 양도하면서 $4,000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4년미만의 경우에 10%이다(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4%). |

**(물음 1)**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국내건물 |  |
| 국외건물 |  |

**(물음 2)** 병의 국내건물 및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국내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8,000,000원, 국외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9,000,000원이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과세표준 |
| 국내건물 |  |
| 국외건물 |  |

**【문제 6】(28점)**

**(물음 1)** 다음은 ㈜한강(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560,000,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과목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비고 | | 제품매출 | 10,000,000,000 | ①, ② | | 용역매출 | 560,000,000 | ③ | | 합 계 | 10,560,000,000 |  |   ① 2017년 12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나,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2,000,000원이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당기 제품매출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15,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용역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타의 용역매출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용역제공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단위: 원)   |  |  |  | | --- | --- | --- | | 과목 | 특수관계인 용역매출 | 기타의 용역매출 | | 용역매출액 | 280,000,000 | 280,000,000 | | 용역매출원가 | 250,000,000 | 200,000,000 |   ④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부문손익에는 중단한 사업부문의 제품매출 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⑤ 회사의 제품매출은 전액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총액은 50,000,000원이며, 이 중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문화예술공연입장권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다.   ② 거래처(특수관계 없음)에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제품(시가 1,500,000원, 제조원가 1,250,000원)을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 대 비 1,400,000 (대) 제 품 1,25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    ③ ㈜한강은 판촉을 위하여 임의단체(우수고객이 조직한 법인 아닌 단체)에 복리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회사는 현물접대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4. 접대비 수입금액 적용률   |  |  | | --- | --- | | 수입금액 |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20/10,00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10/10,000 | | 500억원 초과 | 3/10,000 | |

**<요구사항 1>**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회사의 제17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매출금액을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제17기 시부인대상 접대비, 접대비 한도액 및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시부인대상 접대비 |  |
| 접대비 한도액 |  |
| 접대비 한도초과(미달)액 |  |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동해(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말잔액의 내역  (단위: 원)   |  |  |  | | --- | --- | --- | | 과목 | 기말잔액 | 비고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3,000,000 |  | | 소멸시효 완성채권 | △ 12,000,000 | ① | |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 | 9,000,000 | ②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A)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다.  ② 단기대여금 대손부인액은 제15기에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을 대손 부인한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재무상태표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원)   |  |  |  |  | | --- | --- | --- | --- | | 과목 | 제17기 | 제16기 | 비고 | | 매출채권 | 1,000,000,000 | 978,500,000 | ① | | (대손충당금) | (25,000,000) | (17,000,000) |  | | 미수수익 | 12,000,000 | 10,000,000 | ② | | 미수금 | 100,000,000 | 150,000,000 | ③ | | 장기대여금 | 300,000,000 | 300,000,000 | ④ | | (대손충당금) | (10,000,000) | (10,000,000) |  |   ① 당기말 매출채권에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500,000원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수출채권 7,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미수수익은 정기예금 미수이자이다.  ③  미수금은 비품 매각대금으로 대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④ 장기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특수관계인)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3. 제17기의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27,500,000원이다.   4.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의 내역  ① 제16기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전기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외상매출금(A): 12,000,000원  ②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받을어음 2매(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 7,700,000원  ③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300,000원   5. 회사는 전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된 매출채권 2,500,000원을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   6.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당기의 대손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로 제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예: 1.2345% → 1.23%)

(답안 양식)

|  |  |
| --- | --- |
| 당기 대손금(◯A) |  |
| 전기말 채권잔액(◯B) |  |
| 당기 대손실적률(=◯A÷◯B) |  |

**<요구사항 2>**

당기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당기의 대손실적률은 0.70%로 가정한다.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한국(지주회사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당기말 투자주식 명세  (단위: 원)   |  |  |  |  | | --- | --- | --- | --- | | 보유  주식 | (주)한국의  지분율 | 당기 수령  현금배당금 | 당기말 결산서상  장부가액 | | ㈜갑(상 장) | 40% | 1,500,000 | 300,000,000 | | ㈜을(상 장) | 60% | 10,000,000 | 65,000,000 | | ㈜병(비상장) | 70% | 1,200,000 | 210,000,000 |   ① ㈜갑과 ㈜을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병은 해외현지법인이다.  ② 피투자회사 중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없다.  2. 당기에 수취한 현금배당금(배당기준일: 2016년 12월 31일)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12,700,000 (대) 관계기업투자(갑주식) 1,500,000  종속기업투자(을주식) 10,000,000  종속기업투자(병주식) 1,2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투자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시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단위: 원)   |  |  |  | | --- | --- | --- | | 일자 | 취득·처분내역 | 취득금액 | | 2014. 2. 1. | ㈜병주식 70% 취득 | 20,000,000 | | 2015. 8.10. | ㈜갑주식 40% 취득 | 100,000,000 | | 2015.11.22. | ㈜을주식 60% 취득 | 50,000,000 | | 2016.10.20. | ㈜갑주식 30% 취득 | 180,000,000 | | 2016.11. 2. | ㈜갑주식 30% 처분 | - |    4. 회사는 ㈜을로부터 무상주 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무상주 배정기준일 2017년 1월 1일)를 교부받았다. 동 무상주는 건물의 재평가잉여금 3,000,000원과 이익준비금 2,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5.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명세  (단위: 원)   |  |  | | --- | --- | | 내 역 | 금 액 | | 사채표시이자 | 1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1,500,000 | | 장기미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2,500,000 |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 500,000 | | 합 계 | 14,500,000 |    6. 제17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00,000,000원이다.   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  |  | | --- | --- | | 지분율 | 익금불산입비율 | | ① 100% | 100% | | ② 50%(주권상장법인은 30%)초과 100% 미만 | 50% | | ③ 이 외의 경우 | 30% | |

**<요구사항>**

㈜한국의 제17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구분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A) | 지급이자관련  익금불산입배제금액(◯B) | 익금불산입액(◯C=◯A-◯B) |
| ㈜갑 |  |  |  |
| ㈜을 |  |  |  |
| ㈜병 |  |  |  |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세계(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기계장치 관련 자료  ① 제1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구분 | 기계장치A | 기계장치B | 기계장치C | | 재무상태표상 기말 취득가액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재무상태표상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 | 6,000,000 | 3,000,000 | |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 6,000,000 | 3,000,000 | 1,000,000 |   ② 기계장치 A, B, C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동종자산에 해당한다. 회사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위의 기계장치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과 동일 종류로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이다.  ③ 회사의 결산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④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신고내용연수는 4년이다.  ⑤ 기준상각률은 0.33이다.  ⑥ 회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하며, 전기말 기계장치 관련 유보잔액은 없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① 회사는 2016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취득하였으며, 제16기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구분 | 업무용승용차D | 업무용승용차E | | 취득가액 | 100,000,000 | 20,000,000 | | 감가상각비 | 20,000,000 | 6,000,000 | | 기타 관련비용 | 2,000,000 | 1,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타 관련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의 합계금액이다.  ③ 회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④ 회사는 업무용승용차 D에 대해서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부상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D의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  ⑤ 회사는 2017년 1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 D와 E를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차)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20,000,000 |  | (대) | 차량운반구(D) | 100,000,000 | |  | 현     금 | 50,000,000 |  |  |  |  | |  | 유형자산 처분손실 | 3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6,000,000 |  | (대) | 차량운반구(E) | 20,000,000 | |  | 현     금 | 10,000,000 |  |  |  |  | |  | 유형자산 처분손실 | 4,000,000 |  |  |  |  |   3.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기계장치 B와 C의 제17기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기계장치B |  |
| 기계장치C |  |

**<요구사항 2>**

회사가 업무용승용차 D, E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17기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백(중소기업)의 제17기 사업연도(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33,400,000원이며, 아래 제시된 내역을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10,000,000원  ②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자산수증이익 25,000,000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③ 2017년 12월 5일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제16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50,000,000원 있었다.  ④ 회사는 2017년 2월 2일에 의결권 있는 지분 80%(지분취득일: 2014.1.2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소재 자회사 ㈜상해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배당금 20,000,000원 중 중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 받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동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과세기간의 ㈜상해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27,000,000원과 2,000,000원이다.  (차) 현 금 19,000,000 (대) 배당금수익 2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    2. 결손금 발생내역  (단위: 원)   |  |  |  | | --- | --- | --- | | 발생 사업연도 | 발생액 | 전기까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금액 | | 2001년 | 100,000,000 | 85,000,000 | | 2016년 | 80,000,000 | 30,000,000 |   3.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구입을 위하여 2017년 12월에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잔금 20,000,000원은 사업용자산의 인도일인 2018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4. 회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신청하였으며,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   5. 회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하며, 기타의 공제·감면세액은 없다.   6. 법인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7.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7이다. |

**<요구사항 1>**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차가감소득금액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과세표준금액 |  |

**<요구사항 2>**

㈜동백의 제17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과 총부담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요구사항 1>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30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공제·감면세액 |  |
| 총부담세액 |  |

**【문제 7】(10점)**

비상장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였다(합병등기일: 2017년 7월 5일).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통 자 료 >**  1. ㈜을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 | --- | --- | --- | --- | | 유동자산 | 50,000,000 | 부채 | 80,000,000 | | 구 축 물 | 50,000,000 | 자본금 | 20,000,000 | | 토 지 | 10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0 | |  |  | 이익잉여금 | 70,000,000 | | 합 계 | 200,000,000 | 합 계 | 200,000,000 |     2. 합병 직전 ㈜을이 보유한 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  |  | | --- | --- | | 구분 | 금액 | | 유동자산 | 50,000,000원 | | 구축물 | 100,000,000원 | | 토지 | 150,000,000원 | | 합 계 | 300,000,000원 |   3.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을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4. 물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갑이 납부하는 ㈜을의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

**(물음 1)**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 가 자 료 >**  1. 합병직전 ㈜을의 주주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주주 | 지분비율 | 취득가액 | | ㈜갑 | 30% | 10,000,000원 | | ㈜병 | 70% | 40,000,000원 |   ㈜갑은 ㈜을의 주식을 2015년 7월 10일에 취득하였으며, ㈜병과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

|  |
| --- |
| 2. ㈜갑은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20,000,000원(시가 42,000,000원)의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10,5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갑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결과에 따른 ㈜병의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다음의 추가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추 가 자 료 >**    1. 합병등기일 현재 ㈜을의 토지 계정에는 취득세와 관련된 유보금액 4,000,000원이 있다.  2. ㈜갑은 ㈜을의 유일한 주주인 ㈜병에게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50,000,000원(시가 150,000,000원)의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20,000,00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였다. ㈜병은 ㈜을의 주식을 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갑과 특수관계가 아니다.  3. ㈜갑은 ㈜을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취득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차)  유동자산   50,000,000 (대) 부 채 80,000,000  구 축 물 100,000,000 현 금 20,000,000  토 지 150,000,000 자 본 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  염가매수차익(수익) 50,000,000 |

**<요구사항>**

위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① 합병으로 인한 ㈜을의 양도손익

(답안 양식)

|  |  |
| --- | --- |
| 양도가액 |  |
| 순자산장부가액 |  |
| 양도손익 |  |

② 합병과 관련된 ㈜갑의 2017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③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의 의제배당금액

**【문제 8】(7점)**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 1)**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자 료 >**  1. ㈜대한은 비상장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대한의 총발행주식수는 설립이후 변동된 적이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주 | 주식수 | 지분비율 | | 갑(본인) | 50,000주 | 50% | | 을(배우자) | 30,000주 | 30% | | 병(아들) | 20,000주 | 20% | | 합계 | 100,000주 | 100% |   2.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 및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각각 20,000원이다.    3.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4. 갑은 2017년 3월 1일에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전체를 ㈜대한에게 유증하였다. 상법상 ㈜대한이 갑의 주식을 유증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회사는 수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이 없다.  5. ㈜대한의 주식 이외에 갑의 상속재산은 없다.  6. 영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계산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이다.  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요구사항 1>**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부과되는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갑의 유증과 관련하여 을과 병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물음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자 료 >**    1. 을은 갑의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50억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 갑은 2017년 9월 30일 해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3. 을은 해당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였다.  4. 갑, 을, 병은 모두 거주자이다.  5. 이자율 10%의 5년 연금현가계수는 3.7907이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 연간 이익률은 2%이다. |

**<요구사항 1>**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기술하시오.

**<요구사항 2>**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3>**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에게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토지를 양도받은 병에게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

**【문제 9】(8점)**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갑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인 ㈜을을 흡수합병하고 2017년 6월 5일 합병등기를 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합병 직전 ㈜갑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500,000원(액면가액 100,000원)이며, ㈜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액면가액 50,000원)이다.  2. 합병 직전 ㈜갑과 ㈜을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회사 | 주주 | 주식수 | 지분비율 | | ㈜갑 | A | 1,400주 | 70% | | B | 600주 | 30% | | 합계 | 2,000주 | 100% | | ㈜을 | X | 1,125주 | 75% | | Y | 363주 | 24.2% | | Z | 12주 | 0.8% | | 합계 | 1,500주 | 100% |     3. ㈜갑은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주식 3주당 ㈜갑의 신주 1주를 교부하였다.  4. ㈜갑의 주주 B와 ㈜을의 주주 Y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이외에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

**(물음 1)** ㈜갑의 주주 A, B와 ㈜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개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 A |  |
| B |  |
| X |  |
| Y |  |
| Z |  |

**(물음 2)** ㈜갑의 주주 A, B와 ㈜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영리내국법인인 경우 각각의 과세문제(구체적인 금액 포함)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만일 과세문제가 없다면 “없음”이라고 적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 A |  |
| B |  |
| X |  |
| Y |  |
| Z |  |

**-끝-**